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특히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수준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때때로 통보되는 그 밖의 기관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생산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생산품을 말한다.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

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재료와 생산품을 포함한 모든 교역 물품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그 일반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말한다.

제조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품 또는 부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산품이란 그 생산품이 추후 다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추출 또는 제조에 의하여 획득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제1절 원산지 결정

제3.2조

원산지 상품

1.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상품이 제3.3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나.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경우. 다만, 그 상품이 제3.4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 다.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각각의 경우, 상품은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3.2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집 또는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 라. 그 당사국의 토양, 하층토,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생산품 또는 천연 자원

- 마.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수집, 포획,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생산품
- 바. 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해 밖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 사. 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보호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만들어진 생산품
- 아. 양 당사국의 해저, 해상 또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하층토에서 잡히거나 추출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외의 생산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차.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는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카.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

제3.4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3.2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상품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여겨지고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이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

료에 4단위 수준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또는

나.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이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목록에 포함된 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와 관련하여 목록에 기술된 특정 규정을 충족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text{인정가치포함비율} = \frac{(\text{본선인도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본선인도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times 100$$

공장도가격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은 본선인도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5퍼센트 포인트 더 낮다.

이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상품의 인정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 Price)은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며, 다음과 같다.

- 가. 상품의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 영역의 수입항으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 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불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 나. 상품의 생산자가 자신이 소재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획득한 경우, 그러한 재료의 가치는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위치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어떠한 비용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그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5조

중간재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3.6조

누적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가공 또는 생산에 완성품의 재료로 사용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그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서 제3.8조에 기재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넘어선 가공이 일어나지 않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그 밖의 형태의 누적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7조

허용치

1.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그 상품의 중량 또는 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3.8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3.4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이 당사국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가. 동물의 도살
- 나. 건조, 냉동, 환기, 냉장 및 이와 유사한 공정과 같이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생산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다. 감별, 세탁, 절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연마, 단순 분쇄 또는 얇게 자르기
- 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를 포함한 세척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시험 또는 측정
- 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로의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포장 공정
- 아.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자.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생산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차.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카.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 타. 방직용 섬유류의 다림질 또는 압착
- 파.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재포장 공정, 그리고 탁송물의 해체 및 조립

- 하.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거.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또는
- 더. 가호부터 너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위 제1항의 목적상, “단순한”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이다.

가.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나.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3.9조
간접재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생산에 사용된 다음의 재료는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 가. 에너지 및 연료
- 나. 설비 및 장비
- 다. 기계 및 공구, 또는
- 라.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고,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그 밖의 재료 또는 상품

제3.10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간주되고, 원산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상품의 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인정가치포함비율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1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해석을 위한 통칙 5에 따라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2. 상품이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인정가치포함비율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2조

자격 단위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특정 생산품이다. 이에 따라,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생산품이 단일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 탁송물이 동일한 호에 분류된 여러 개의 동일한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생산품이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제3.13조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3.14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를 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당사국의 회계연도 동안 그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3.15조

상품의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생산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2절
영역 및 통과

제3.16조
영역 원칙

1. 제3.2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관련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되는 경우, 그 상품은 비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져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3. 제3.2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고 그 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되는 재료에 대해서 그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재료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제3.8조에 언급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어야 한다. 그리고

나.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1) 재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그리고

2) 이 조를 적용함으로써 당사국 밖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생산품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3항의 목적상, 제1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최종 생산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인정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는 최종 생산품에 대하여 기재된 인정가치포함비율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은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생산품 또는 제3.7조의 일반 허용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생산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조와 관련된 사실 정보는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될 것이다.

7. 제3항나호2목을 적용하는 목적상, “총 부가가치”는 수출 당사국 밖에서 결합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8.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수출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침에 따른 역내 및 역외 가공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9.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조에 따른 특정 상품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그 논의의 개시부터 3년 내에 그러한 논의를 마친다.

제3.17조

통과 및 환적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 비당사국을 통하여 통과되거나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는 경우, 다음을 조건으로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통과 또는 보관되는 비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수입 당사국의 특정 국내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라벨의 추가 또는 부착, 통과 또는 보관되는 비당사국들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수행되는 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 외에 그 비당사국에서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수입자는 요청에 따라, 상품이 통과 또는 보관되는 국가들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공한다.

제3.18조

자유지역

1. 양 당사국은 운송 도중 양국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원산지 증명하에 거래되는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이 원산지 증명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처리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 그 처리 또는 가공이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 내에 위치한 자유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은, 그 처리 또는 가공이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고 원산지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수출될 때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3절 원산지 증명

제3.19조 원산지 증명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여겨진다.

가. 제3.20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

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제3.21조에 따라 상호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의하여 교환되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다. 제3.22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3. 원산지 증명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이 영어로 작성되고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3.20조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¹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부속서 3-나에 언급된 서식으로 작성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근무일 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5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으나 그 유효기간은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부속서 3-나에 기술된 적절한 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영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상품이 제3.17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¹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특정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한국의 경우, 이 책임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부여된다.

소급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2가의 의미 내에서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생산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서는 첫 번째 분할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7.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등본은

가.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 후 1년 이내에 발급된다.

나. 원본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신청을 기초로 한다.

다. 원본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및 발급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8.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의 참조 번호는 부속서 3-나에 기술된 대로 새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적절한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은 원본과 동일할 것이다.

9.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에 작성된 내용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작성된 내용 사이에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원산지 증명서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21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1. 제3.19조제2항나호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특히 전자 원산지 증명서의 전송에 대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 교환에 대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한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는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지칭한다.
2. 그러한 교환 시스템의 구축 전에, 양 당사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당국이 운영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3.22조

원산지 신고

1. 제3.19조제2항다호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이행한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 상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부속서 3-다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그러한 권한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5.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 목록을 공유하거나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7. 원산지 신고서(부속서 3-다에 제시된 문안)는 인증수출자가 관련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 서류에 신고 내용을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된다. 신고서는 또한 수기로 작성될 수 있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 내구성이 있는 잉크를 사용하여 판독 가능한 정자로 작성된다.
8.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제3.23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다음을 규정한다. 수입자는,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그 세관 신고서에 진술하거나 달리 기재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하고, 요구되는 경우 이를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다.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와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보다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다만, 그 수입은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6.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가 판독 불가하거나 표면에 결함이 있거나 부속서 3-나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원산지 증명서와 서면 신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관세 당국이 대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날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이 수입자에게 부여될 것이다.

제3.24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하여, 상품이 수입된 날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고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및 적절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제4절

협력 및 원산지 검증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나. 상품의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 다.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 라.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제3.26조에 따른 검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3. 특혜관세대우 거부의 근거를 전달받은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6조

검증

1.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4. 검증을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5. 합리적 의심이 있고 검증의 요청일부터 6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요청 관세 당국은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6.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공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위의 검증 결과에 관하여, 추가 정보, 서류 또는 설명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 그러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공된다.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그 목적을 위하여,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수행하려는 수입 당사국의 의사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수출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한다. 방문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행된다.

3) 수출 당사국의 공무원은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이 방문 시 그리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서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과 동행하고 그를 지원한다. 그리고

4)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검증 방문이 완

료된 날 후 3개월 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다.

제3.27조

제3자 송장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산지 신고서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제3자 송장” 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는 부속서 3-나(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적절한 란에, 또는 제3.22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표시된다.

제3.28조

기록 유지 요건

1. 제3.26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이 발급되거나 작성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증빙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 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다. 권한 있는 당국²은 원산지 증명 신청에 대한 모든 증빙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제3.29조

비밀유지

1. 이 장의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전달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 양 당사국의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분명한 허가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3.30조

연락처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 내의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하나 이상의 연락처에 대한 연락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²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특정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한국의 경우, 이 책임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부여된다.

제3.31조

상호 지원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발효 전 다음을 서로 제공한다.

- 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식 우표와 서명의 견본
- 나.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 다. QR 코드 및 전자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을 위한 보안 웹 주소

제5절

협의 및 변경

제3.32조

협의 및 변경

양 당사국은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적절히 협의하고 협력한다.

- 가. 이 장의 해석을 포함하여, 이 장이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 나. 검증을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과 검증을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 간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작업한다. 그리고
- 다. 기술, 생산 절차 및 그 밖의 관련 사안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이 장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을 논의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두주

1.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해석을 위하여,

HS 코드란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를 말한다.

부란 HS 코드에 규정된 부를 말한다.

류란 HS 코드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호란 HS 코드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HS 코드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2.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가. 제1열 - HS 코드(류, 호 또는 소호)
 - 나. 제2열 - HS 코드에 따른 품목명
 - 다. 제3열 -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 라. 제4열 -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제3열 및 제4열에 명시된 경우, 수출자는 제3열 또는 제4열에 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4. 일부 경우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 로 시작하면,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에 기술된 그 소호, 호 또는 류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6. 제3열과 제4열의 목적상,

완전생산기준(WO)이란 상품이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된 상품)에 따라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말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이란 제3.4조에 명시된 인정가치포함비율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계산된다. 다만, 공장도가격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은 본선인도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5퍼센트 포인트 더 낮다. 그리고

해당없음은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없음을 말한다.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3)	(4)
(1)	(2)	(3)	(4)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2류	육과 식용 설육(脣肉)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9류	커피·차·마테·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제10류	곡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다음을 제외함.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110311	밀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110412	귀리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 [예: 발삼(balsam)]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3	<p>것은 제외한다)</p> <p>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p>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4	<p>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p>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5	<p>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p>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601	<p>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피·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p>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3	<p>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p>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	<p>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p>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5	<p>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p>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1701	<p>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을 제외함.</p>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1.99	<p>기타</p>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702	그 밖의 당류(糖類)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 없다), 캐러멜당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3	당밀(糖蜜) [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재료는 제외한다)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제4류의 재료는 제외한다)
ex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2008.99	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2.21호, 제1212.29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2106.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2202.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6단위 세번변경기준	

	석고·석회·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제2710호의 목적상,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에 더하여, 다음의 공정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가. 제3.8조제2항나호(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화학반응 나. 상압증류법(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다. 감압증류법(대기압보다는 낮으나 분자증류법으로 분류될 정도로 낮지 않은 압력에서 증류됨)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0류	의료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1류	비료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이상일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 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 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5002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5003	견 웨이스트(waste) [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품, 주화.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110	천연진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7106, ex 7108 및 ex 7110	귀금속 - 가공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의 융합 및/또는 합금, 또는 제련	해당없음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	해당없음

	부분품·부속품	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부속서 3-나
원산지 증명서

[QR 코드
또는
웹사이트]

<p>1.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p> <hr/> <p>2.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p> <hr/> <p>3. 수입자의 이름, 주소, 국가</p>	<p style="text-align: center;">참조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p> <p style="text-align: center;">원산지 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발행국 _____ (국가)</p> <p>뒷면 주해 참조</p>																								
<p>4.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p> <p>출항일: 선명/편명 등: 선적항: 하역항:</p>	<p>5. <input type="checkbox"/> 제3자 송장 (이름 및 주소)</p> <hr/> <p>6. 비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7. 품목 번호</td> <td style="width: 17.5%;">8. 상품의 품명(포장의 표시 및 번호)</td> <td style="width: 17.5%;">9. HS 코드</td> <td style="width: 12.5%;">10. 원산지 기준</td> <td style="width: 12.5%;">11. 총 중량, 수량</td> <td style="width: 17.5%;">12. 송장 번호 및 날짜</td>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7. 품목 번호	8. 상품의 품명(포장의 표시 및 번호)	9. HS 코드	10. 원산지 기준	11. 총 중량, 수량	12. 송장 번호 및 날짜																			
7. 품목 번호	8. 상품의 품명(포장의 표시 및 번호)	9. HS 코드	10. 원산지 기준	11. 총 중량, 수량	12. 송장 번호 및 날짜																				
<p>13. 수출자 신고</p> <p>아래의 서명자는 이 증명서 기입을 위한 설명을 읽었으며, 상품이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p> <p>날짜</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서명</p>	<p>14. 증명</p> <p>이 증명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며 이 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margin: 20px auto; width: 80px;"> <p>서명 및 관인</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날짜, 서명 및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p>																								

뒷면 주해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상품의 생산자(이름 및 국가)를 제공한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제1란에 기재한 대로 이란에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제3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알고 있는 경우,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선적항과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제3자 송장: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자 송장”란에 체크(V) 표시를 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름 및 주소 정보가 기재된다.

제3자가 발행한 송장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시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의 번호 및 날짜는 제12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5란에는 다른 송장을 발행할 회사 또는 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적시하여, 상품이 수입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제3자가 발급한 다른 송장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 신고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당사국으로의 거래를 확인하는 송장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란 비고: 이란은 수출국이 작성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급 발급**” :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는 제3.20조제4항에 따라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진정 등본**” : 제3.20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대체**” : 제3.20조제8항에 따라 대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전 원산지 증명서의 번호를 기재한다.

“**역외 가공**” : 제3.16조에 따라 역외 가공한 경우

“**그 밖의 정보**” : 필요한 경우

제7란: 품목 번호를 기재한다.

제8란: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의 운송표장 및 숫자, 포장의 수량 및 종류도 명시한다.

제9란: HS 코드는 수출 당사국의 코드를 말한다. HS 코드가 6단위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경우, 첫 6단위만 고려될 것이다.

제10란: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자는 이 양식의 제9란에 자신의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가. 제3.3조를 충족하는,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완전생산기준”
나.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번변경인정가치포함비율특정 제조 또는 가공결합 기준	“CTC” “QVC” “SO” “COMBO”
다. 제3.2조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 중량이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13란: 이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장소 및 서명일을 삽입한다.

제14란: 이란은 권한 있는 당국의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어야 한다.

부속서 3-다

제3.22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이 서류(관세 당국 인증번호: _____³⁾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생산품이 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_____⁴의 특혜원산지 상품이며, 충족한 원산지 기준은 _____⁵임을 신고한다.

장소 및 날짜

수출자의 서명 및 관인, 또한 이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³ 이 란에는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⁴ 생산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⁵ 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이 표시된다.